

의안번호	2209785
의 퇴 인	허영 의원
회 답 일	2025. 5. 12.
추계번호	25A2315

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7조 (경제교육인력의 양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교육과 관련된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	재량 규정
2	안 제9조 (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·운영)	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 － 지역별 및 세대별 교육대상을 고려한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－ 노년층,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및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	의무 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 (경제교육인력의 양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9조 (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·운영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과 관련된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,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사업에 금융범죄 피해예방교육을 추가할 경우 국가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개정안의 내용은 대부분 현재 기획재정부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개정안은 이를 보다 확대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소요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사유에 해당함
- 현재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관리위원회¹⁾를 통해 경제교육 정책을 수립하고,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원·경제교육인력양성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경제교육지원 사업(7135-304)을 운영하고 있음
 - (지역경제교육센터) 현재 16개 센터를 운영 중이며, 3년 단위 사업자 공모 후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연도말 사업결과보고서 등을 점검. 교육수요 증가 및 대상별 교구재 개발을 위해 '25년 예산을 증액 편성함
 - (경제교육인력양성) 초·중·고등 사회과·비사회과 교사 및 지역경제교육센터 강사의 경제교육 역량 강화 연수, 지자체별 경제교사연구회 진행 등을 실시 중. 경제교과서 개편에 따른 과정 개편 및 추가 과정 신설을 위해 '25년 예산을 증액 편성함

[표 1] 경제교육지원 사업 예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3		2024			2025
	예산현액	집행액	본예산	예산현액	집행액	예산
합 계	6,177	5,546	6,369	6,614	6,498	8,240
·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원	3,540	3,540	4,012	4,012	4,012	5,662
· 경제교육인력양성	600	600	800	800	800	980
· 경제교육포털운영	189	176	45	45	45	-
· 경제교육 협력지원	100	100	300	300	286	100
· 경제이해력 조사	162	146	162	162	154	177
·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및 운영	1,489	893	969	1,215	1,133	1,068
· 국제협력 강화	-	-	-	-	-	149
· 경상경비	97	90	81	81	68	104

자료: 기획재정부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1) 기획재정부 2차관이 위원장이며, 정부위원 8명(관계 부처 1급)과 경제계·학계 등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주계세제총괄과	태정립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태정립	02-6788-4652	jitae@nabo.go.kr